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 환경부 ●

환경부령 제126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2년 8월 2일
환경부 장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 (2002년 7월 1일이후)중 규모란의 승용1 및 승용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승용1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차량총중량 2.5톤 미만 및 승차인원 8인 이하
승용2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총중량 2.5톤 미만의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별표20 나목4)(2002년 7월 1일이후)비고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동차로서 2002년 7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경자동차·승용1은 3)의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적정하게 규제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의 분류기준을 유럽연합의 기준에 맞추어 조정하고 경유를 사용하는 경자동차 및 승용1자동차의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시기를 2002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